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 절차

어떤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기업이 있다면 첫 번째 절차로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주의 책임을 한정하는 형태인 "corporation"과 "limited liability company(LLC)"가 많이 이용된다. corporation은 한국의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의 법인으로 회사의 부채에 대해 주주가 자신의 투자 금액 이상의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주주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영속해 존재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주식의 양도 및 주식의 발행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에서 추가 투자자 모집이나 상장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corporation을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LLC의 경우 member라고 불리는 회사 소유주의 책임을 한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corporation과 동일하나,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및 각종 기록 보관 등 행정적인 준수사항에서는 corporation에 비해 그 부담이 매우 적다. 또한, LLC의 경우 연방소득세법상 path-through entity로 인정돼, member의 소득과 회사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가 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이외에도 지사의 사업 계획, 규모, 절세 목적과 관련된 이익 발생 가능성 및 금액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설립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할 것을 권한다.

어느 주에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지 결정되면 지사를 어느 주에 설립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지사가 위치하는 주의 법인(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사의 위치와 관계없이 델라웨어주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델라웨어주는 1900년대 초반부터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법인 설립지로 선호하는 주로서 명성을 쌓아왔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입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델라웨어주 의회는 기업들이 사업 목적에 따라 법인의 형태를 달리 선택할 수 있도록 non-stock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close corporation, statutory trust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설립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법을 다른 주에 비해 일찍 소개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해 왔다. 또한, 사법적인 측면에서 델라웨어주는 기업 관련 소송을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일반법원이 아니라 기업 소송을 전담하는 Court of Chancery에서 말도록 했으며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Court of Chancery에 수십 년간 쌓여온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법인 및 이해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좀 더 쉽게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지사의 소유관계가 복잡해 주주나 member 간의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향후 지사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및 M & A 활동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된 판례법이 잘 확립된 델라웨어주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사의 실제 위치가 델라웨어주가 아닌 경우, 델라웨어주에 설립한 법인을 지사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주에 추가로 등록하고 그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사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지사의 설립지를 선택한 다음에는 지사를 실제로 설립하는 절차를 알아야 하는데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주 정부의 법인 등록 관청은 주별로 다를 수 있으나 많은 경우 Department of State 또는 Office of Secretary of State에서 담당한다.

1. 사명 결정 및 확보

지사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을 정한 후에는 해당 주에 그 이름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줄 정도로 흡사한 이름을 이미 사용하는 다른 법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기존에 등록된 법인들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 이전이라도 원하는 이름을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몇 달간 유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주에서 corporation의 경우 사명 뒤에 “Inc.”, LLC의 경우에는 “LLC”와 같이 법인의 형태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단어를 추가하도록 요구한다.

2. Registered Agent 등록

주별로 관련 법이 상이한데, 회사가 실제 설립된 주에 위치할 경우 등록 대리인(registered agent)을 따로 임명하지 않아도 되는 주와 실제 위치와 관계없이 반드시 등록 대리인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주가 있다. 이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고지의 편의 및 정확성을 위한 것이다.

3. Certificate of Formation 등록

회사명, 주소(또는 등록 대리인의 주소), 발행 가능 주식 수(corporation의 경우) 등 회사의 기본 사항을 담은 서류인 certificate of formation(corporation의 경우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며,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주마다 다를 수 있음)을 해당 주 담당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인터넷을 통해 certificate 양식을 pdf 파일로 제공하며 우편 또는 팩스로 등록이 가능하다. 소액의 등록 수수료를 요구하는 주가 대부분이다.

법인 설립 그 이후

1~3 단계의 과정을 마친 후 주 정부에게서 법인이 등록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회사의 공식적인 설립 작업이 완료돼 법인격체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실제에서는 정관(bylaws), 주주 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LLC 운영계약서(LLC operating agreement) 등 회사의 운영과 소유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게 되지만, 위의 3 단계를 거치면 법인 설립 및 등록에 대한 신청 작업은 완료된다. 또한, 대부분 주에서 등록세(franchise tax 또는 registration fee)를 내야 법인 등록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corporation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매년 주 정부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에 설명한 법인 설립 작업은 직접 할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해당 주에 등록된 변호사를 통하거나 법인 설립 전문 서비스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업체의 경우 원하는 주의 이름과 "entity formation"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예를 들면 Nevada entity formation) 쉽게 찾을 수 있다.

< 코트라 발체 : 2013-12-20 이윤정 미국 워싱턴무역관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회사 설립 시 알아야 할 사항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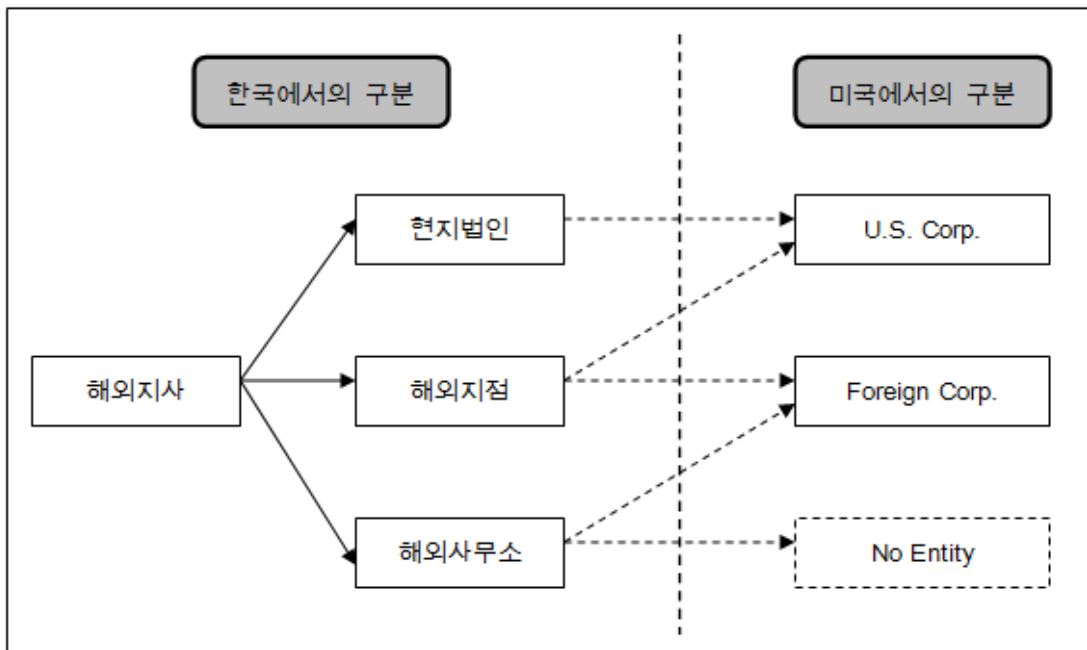
-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회사 설립 시 알아야 할 사항들(상)
 - 회사 설립 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려해 선택해야 -
 - 현지 법인 중 S-Corporation 이 가장 좋으나 까다로운 조건 문제 -

□ 해외지사의 구분

○ 구분

- 해외지사는 지점, 지사, 사무소, 출장소, 지부, 주재소, 현지법인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나 일반적으로 현지법인, 해외지사, 해외사무소의 3 가지 구분이 가장 일반적임.
- 외환관리규정 상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해외지사는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됨.
- 현지법인(US Domestic Corporation)은 미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한국본사와는 별도로 회계처리와 세무보고 과정을 거치는 회사를 의미함.
- 해외지점(Branch)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해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지사를 지칭하며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해외사무소(Liaison Office)는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가 국외에서 해당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사임. 미국에서 대부분 외국인회사(Foreign Corp.)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해외지사 구분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자체조사

□ 해외지사의 설립

○ 미국에서의 회사설립

- 미국 진출 시 처음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회사형태로 설립할 것인가?’임.
-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미국에 거점을 두는 방식은 현지법인(자회사), 해외지점, 해외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며 이를 통상 해외지사로 표현함.
- 그러나 미국법에 따른 법인의 구분은 현지법인(US Corporation-Subsidiary, 자회사)과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Branch, 해외지점)으로 구분함.
- 현지법인과 외국법인의 기본적인 차이는 미국의 주정부에 현지법인으로 등록하느냐, 외국법인으로 등록하느냐에 달려있을 뿐, 설립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한국의 본사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에는 큰 차이가 있음.

○ 현지법인(US Corporation-Subsidiary, 자회사)

- 미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결산을 따로 하는 회계처리와 세무보고과정을 거침.
- 한국의 모기업이 미국에 있는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가지면 미국에 있는 회사가 지사가 됨.
- 미국지사와 한국본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돼 법적 책임과 의무는 별개임. 따라서 법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움.
- 사업의 법적주체가 현지법인이므로 사업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현지법인에게만 있어 이것이 한국본사로 전가되는 일이 없음.
- 세금과 관련해 납세 후에 발생하는 수익을 본사로 과실송금(주: 외국 투자자가 취득한 이익금을 대외에 송금하는 행위)할 경우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10-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됨.
- 미연방세무국(IRS) 세무감사 시 세무감사의 범위는 현지법인에 국한됨.

○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Branch, 해외지점)

- 한국법인이 미국 사업자 등록법에 따라 외국기업으로 등록한 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임.
- 사업의 법적 주체가 한국의 본사이며 본사는 미국에 있는 사무소와의 관계에서 법적, 금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세무감사 시에 그 범위가 한국 본사에까지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미국에 해외사무소를 낼 경우 회계적인 측면에서 해외사무소의 경비는 본사의 영업비용으로 대부분 처리함.

○ 현지법인의 설립등록

- 주정부에서 담당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제한규정이 없음.
- 설립인원은 1명 이상이며 설립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됨.
-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본사가 현지법인의 채무 등에 연대책임이 없으며 독립채산제에 의거 본사와 별개로 회계처리와 세금 신고함.

○ 외국법인의 설립등록

- 본사와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본사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회계처리는 본지점 회계제도를 채택함.
- 소비자 보상, 노동법 상의 문제 발생 시 한국본사의 연대책임 부담의무가 있으며 해외의 이익금을 본사로 배당 시에 배당금의 30%를 지점이익세금(Branch Profit Tax)로 납부해야 함.

법인 형태의 비교

구 분	U.S. Corporation (현지법인)	Foreign Corporation (해외지점)
설립시 차이	현지 법에 따라 진행	본사의 등기부 등본 제출 (이외는 현지법인과 동일)
본사 연대책임 의무	없음	있음
영업가능 여부	가능	(영업/판매 필요시) 가능
Business License	가능	(영업/판매 필요시) 가능
Business Permit	(필요시) 가능	(영업/판매 필요시) 가능
(Seller's Permit)	가능	(영업/판매 필요시) 가능
파견자의 비자 종류	E1, E2 & Employee, or L1	E1, E2 & Employee, or L1
비자 연장시	법인의 실적자료 있어 연장시 자료대응 가능	(영업/판매 없는 경우) 실적 증명자료 없어 문제소지
세금보고 (회사) 세금보고 (개인)	의무 있음	의무 있음 (영업 없을시, 수익 "0" 신고)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자체조사

○ 회사의 종류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영업활동을 개인본인명의로와 법인명의로 할 수 있음. 개인이 본인명의로 영업하는 것을 자영업(Sole Partnership)이라고 함.
- 법인은 법률에 의거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된 법인체이며 법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에 법인명의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법인의 설립이라고 함.
-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법인을 5 가지 종류로 분류함.
 - (1) 일반조합 (General Partnership)
 - (2) 유한조합 (Limited Partnership)
 - (3) 유한책임조합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4) 유한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 (5) 주식회사 (Corporation)

○ 주식회사(Corporation)

- 주식회사는 가장 보편적인 회사의 형태이며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지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함.
- S-Corporation, C-Corporation 은 주식회사의 한 종류이며, 아무런 언급이 없이 Corporation 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C-Corporation 을 지칭함.

○ C-Corporation

- C-Corporation 은 주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부분 동일하나 미국은 주주가 주식회사를 개인회사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 즉 개인용도의 지출을 법인의 지출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할 경우에는 주주가 유한책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점이 차이점임.
- 장점으로서는 유한책임을 들 수 있음. 즉 투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만 지면되고 법인이 큰 손실이 나도 주주는 투자한 금액만 손해를 보게 됨.
- 또한 주식을 신규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주주는 회사의 동의없이 주식을 매각할 수 있어 자금유통이 용이함.
- 단점은 세무측면에서 볼 때 이중과세임. 즉 회사의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또 주주는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
- 그리고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에 대한 서류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관리가 복잡함.

○ S-Corporation

- 일정요건을 갖춘 C-Corporation 이 연방국세청(IRS)에 Form 2553 을 제출해 승인을 받은 세법상의 회사형태임.
- C-Corporation 의 단점인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점만 제외하고는 다른 측면에서 C-Corporation 과 동일함.
- 현재 S-Corporation 이라 하더라도 설립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S-Corporation 의 지위를 상실하고 C-Corporation 으로 간주돼 이중과세를 부담해야 함.
-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음.
 - (1)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있어서는 안됨.
 - (2) 주주 수는 100 명 이하 이어야 함.
 - (3) 주식회사 및 파트너쉽은 주주가 될 수 없음.
 - (4) 주식은 한 종류(보통주)만 발행해야 함.
- 장점으로서는 이중과세 회피를 들 수 있음. 즉 회사에서 발생된 순이익에 대해 회사는 연방정부에 대한 법인소득세 부담없이 주주에게 이전돼(Pass-Through) 주주는 개인소득세만 납부함으로써 세금납부가 종결됨.
- 또한 회사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액만큼 주주의 다른 소득에서 차감돼 개인소득세를 줄일 수 있음. 그러나 주정부의 소득세는 순이익 규모에 따라 납부해야 함.
- 또한 C-Corporation 과 같이 주주는 유한책임만을 짐.
- 회사의 순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된 소득은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음.
- 단점으로는 주주 중에 비거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립이 불가능함. 그리고 주주수가 100 명으로 제한돼 있고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할 수 있어 대규모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을 수 있음.
- 정기적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에 대한 서류를 관리해야 하므로 서류관리가 복잡함.

□ 시사점

- 현지법인 중 S-Corporation 으로 설립하는 것이 최상
 - 법적인 책임 면에서 자유로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해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90% 이상이 현지법인 형태로 설립돼 있음.
 - 주식회사 중 S-Corporation 이 이중과세 회피 및 유한책임의 측면에서 유리하나 설립 요건 중 주주 중에 비거주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에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인 경우 C-Corporation 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자료원: 현지 변호사 및 회계사 인터뷰, KOTRA 로스엔젤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회사 설립 시 알아야 할 사항들(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회사 설립 시 알아야 할 사항들(하)

- 직원 파견 시 다양한 비자 형태 존재하므로 가장 적합한 방법을 고려해 선택해야 -
- 비자신청 및 취득절차는 회사설립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

□ 파견직원 비자의 종류

- 법인설립 초기단계부터 비자문제 검토 필요
 - 미국 진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파견직원의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를 위한 적절한 비자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임.
 - 비자신청 및 취득하는 절차는 회사설립 절차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인설립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및 회계사와 긴밀히 협의해 비자문제를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함.
 -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면 회사의 여건에 따라 투자자, 직원 및 직계가족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투자자 비자
 - 투자자 비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 (1) E-2 Investor 비자 : 한국에 운영하는 회사가 없이 미국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해 투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
 - (2) EB-5 투자이민 : 투자와 동시에 이민자 신분으로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후에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영주권을 받는 비자
- 직원(주재원) 비자
 - 주재원 비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
 - (1) L-1 비자 : 한국의 본사가 미국지사를 설립한 경우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지사에 파견해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
 - (2) E-1 비자 : 미국과 상호무역 체결협정을 맺은 국가의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

(3) E-2 Employee 비자 :

미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기업 관계자와 그 직원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

(4) H-1B 비자 :

대학졸업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로 보통 하이텍 비자라고 칭하는 데 미국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직종의 미국회사에 취업할 때 발급되는 비자

○ E-2 비자와 L-1 비자의 비교

- 다양한 비자 중 E-2 비자와 L-1 비자가 일반적이며 다음의 비교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E-2 비자와 L-1 비자의 비교

구 분	소액투자(E-2) 비자	주재원(L-1) 비자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나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본사에서 3년중 1년 이상을 간부/관리직 종사자 또는 전문기술/지식소유자로 근무한 자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투자로 장기체류 가능 • 배우자의 미국내 취업가능 • 동반가족의 공립학교 입학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지사 운영후 영주권신청 가능 (노동청 허가 신청 단계 불필요) • 배우자의 미국내 취업 가능 • 동반 가족의 공립학교 입학가능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신청 불가능 • 신청인의 부모나 21세 이상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비자 발급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포함 최고 7년까지만 체류가능
신청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에 입국해 있을 경우, 이민국 통한 체류신분 변경 가능 •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한 비자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국에 서류접수 후, 승인되면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송부되어 미국대사관에서 발급
소요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내 이민국을 통한 경우 급행으로 할 경우 2주 정도 (체류신분변경은 인터뷰 필요 없음) •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경우 3~4주내 인터뷰 날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급 3~4개월(급행으로 요청시 2주) •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시 1~2개월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개 5년이나 지속적으로 매2년씩 비자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3년 유효 비자 발급후 4년까지 연장가능(최대 7년 동안 체류 가능) • 최근에는 1년짜리가 일반적이며, 1년 후에 연장이 어려운 상황
투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고, 업체의 성격과 지역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의 판단기준이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본사가 기존 또는 신규 미국현지 법인의 주식을 과반수이상 소유하면 투자금액과 비율에 대한 제약은 없음

자료원: KOTRA 로스앤젤레스 자체 조사

□ 시사점

○ 일반적으로 L-1 비자 선호

- 본사에서 투자자금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추후 영주권 신청 가능 등의 선택권이 있다는 점 때문에 L-1 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최근의 이민국의 동향으로 볼 때 L-1 비자의 기각률이 높음. 또한 한국에서 L-1 비자를 받아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이 1년짜리로 기간이 짧으며 최근에는 비자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 시 소액투자(E-2) 비자의 신청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현지 변호사 및 회계사 인터뷰, KOTRA 로스엔젤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